

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 (이하 “사업주”라고 한다)와 근로자 (이하 “근로자”라고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상호 신의의 원칙하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,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## 제 1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31일까지 유효하다.

## 제 2 조 (근무장소 및 종사할 업무)

- ① 근무장소 : 사업장 소재지 및 업무담당 지역 ② 담당업무 : 고객상담
- ③ “근로자”는 “사업주”의 사업과 관련하여 “사업주”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“사업주”는 업무내용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. 단, “사업주”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“근로자”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 3 조 (근로시간 및 휴게)

- ① 근로일 : 매주 (월, 화, 수, 목, 금)요일
- ② 근로시간 : 10:00 부터 19:00 까지
- ③ 휴게시간 : 12:30 부터 13:30 까지 (1 시간)
- ④ “사업주”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변경하여 “근로자”를 근로시킬 수 있다.
- ⑤ “사업주”는 “근로자”에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, “근로자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
## 제 4 조 (임금)

- ① “근로자”의 시급은 원(세전)으로 하고, 익월 10 일에 지급한다. 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.
- ② “사업주”는 “근로자”의 일당에서 원천세, 4대 보험료를 공제 후 실 수령액을 지급한다.
- ③ 월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## 제 5 조 (휴일)

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.

## 제 6 조 (휴가)

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
### 제 7 조(책임과 의무)

“근로자”는 근무기간 중 부여된 직무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“사업주”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 본인의 업무를 이용하여 “사업주”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재직 중 경쟁업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 8 조(기타사항)

-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“사업주”가 정한 제규정에 따른다.
- ② 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으로 인한 연봉 및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사업상, 재산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2년 01월 01일

사업주	주식회사자비스엔빌런스	
(인)	대표자 김 범 섭	사업자등록번호 158-86-00171
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	

근로자		
(인)	이름	생년월일